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성권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621

발의연월일: 2024. 6. 19.

발 의 자:이성권·백종헌·곽규택

주진우 · 이헌승 · 김미애

정연욱 · 조승환 · 김도읍

박성훈 · 김희정 · 김대식

서지영 · 조경태 · 정동만

구자근 • 정성국 의위

(17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역 간 불균형 해소 특히 수도권과 지방 간 격차 해소 목적으로 2 004년 「국가균형발전 특별법」과 2007년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이 마련되었음. 이를 바탕으로 1차 공공기관 이전이 이 뤄졌음. 1차 공공기관 이전은 지역별 특화 산업 육성이라는 취지로 진행됐음.

부산은 2009년에 금융중심지로 지정됐던 만큼 한국주택금융공사,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자산관리공사 등의 금융기관이 해양 분야 공공기관과 함께 부산으로 이전하였음. 부산은 2009년에 금융중심지로 지정됐던 만큼 한국주택금융공사,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자산관리공사 등의금융기관이 해양 분야 공공기관과 함께 부산으로 이전하였음. 이에 금

용중심지로서 부산의 위상을 보다 확고히 하기 위해 국내의 굵직한 금융기관들이 선제적으로 부산으로 이전하여 안정적인 금융생태계를 조성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KDB산업은행, IBK중소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과 함께 예금자보호 및 금융제도 안정을 목적으로 하는 국책기관인 예금보험공사를 부산으로 이전하여 부산의 금융생태계 조성의 견인차가 되도록 하고, 금융중심지로서 국제적 위상을 높일 수 있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음.

국가균형발전은 중차대한 국가적 과제가 되었음. 예금보험공사의 부산 이전은 지역별 특화를 고려한 공공기관의 고른 지역별 분배와 지역 간 격차 해소를 통해 달성하려는 국가균형발전의 취지에도 부합할 것임.

이에 예금보험공사의 주된 사무소를 부산광역시에 두도록 법률을 개정함으로써 부산광역시가 금융중심지로서 위상을 확고히 하고, 궁극 적으로는 국가균형발전이라는 목표에 부합하고자 하려는 것임(안 제5 조의2제1항). 법률 제 호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예금자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제1항 중 "서울특별시"를 "부산광역시"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2조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본점 이전에 관한 준비행위 등) 예금보험공사는 이 법 공포일부터 2개월 이내에 본점 이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의2(사무소) ① 공사는 주된	제5조의2(사무소) ①	
사무소를 <u>서울특별시</u> 에 둔다.	<u></u> 부산광역시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